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박 진 희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8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1일

3. 제안이유

위원회 당연직 대상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기타 조문의 미비한 점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기관명칭 변경(안 제3조)

- “충북지방경찰청” → “충청북도경찰청”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5조 및 제7조)

다. 수당지급 근거 조례 제명 수정(안 제8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개정안은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, 동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의 명칭을 바로잡았으며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거나 한자를 병기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개정안은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기존 “충북지방경찰청 차장”의 명칭이 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으로 인하여 “충청북도경찰청 차장”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, 동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의 명칭을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로 바로잡았으며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거나 한자를 병기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 - 제3조제3항 본문 중 “충북지방경찰청”을 “충청북도경찰청”으로, “도지사”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반영함.
  - 제5조의 제목 “(위원의 위촉 해제)”를 “(위원의 해촉)”으로 정비함.
  - 제5조 본문 중 “위촉 해제 할”을 “해촉할”로 정비함.
  - 제7조제3항 중 “개의하고”를 “개의(開議)하고”로 정비함.
  - 제8조 본문 중 “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로,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정비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본 조례안은 단순한 표현·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호에 해당하여 조례안 예고 생략.
- 관련 부서: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특이사항 없음”

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 당연직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의 명칭을 바로 잡았으며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거나 한자를 병기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